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19 선고 2022가단555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배지현

변 론 종 결 2023. 3. 29.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8. 체결된 상속분할협의계약을 55,616,168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616,1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 1) D는 2016. 12. 2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오토론(중고차) 약정(금리 연 13.9%,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연체이자율 2회차 미만 시 24%, 2회차 이상 시 25%)을 체결하고, 5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2) E는 2020. 7. 20.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D에 대한 위 1)항 기재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F는 2020. 12. 10. 1)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F의 위임을 받아 2021. 3. 11.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D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3)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잔액은 2022. 1. 7. 기준 55,616,168원(= 원금 36,991,990 + 인수 이자 잔액 11,680,833원 + 인수 후 이자 잔액 6,943,345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D와 피고는 남매이고, 모친인 고(故) G(H생으로 2021. 4. 28. 사망하였다.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자녀로 피고와 D 외에 I, J, K를 두었다.
- 2) 고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D 및 I, J, K는 2021. 7. 25. 고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2021. 10. 20. 등기원인을 '2021. 4.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L은 2021. 10. 14. 매매(거래가액: 3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재산상태

D는 지체장애 6급을 인정받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이 마쳐진 자이다. D는 맞춤형 직장 사업 등을 시도한 바 있으나 폐업하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다.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밖에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소유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1/5 지분)을 넘겨주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사해행위의 범위 내2) 에서 피보전채권액에 상당하는 55,616,168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피고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3) ,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그리고 인정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른 재산분할결과는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D에 대하여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법률상 평가되는) 상속포기와 사실상 유사한 신분상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② 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고인이 보유하였던 계좌의 잔액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구입자금을 조달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다음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금을 조달하여 모친인 고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무렵인 2002. 11. 25. 피고의 계좌로 8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76,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위 액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매매대금인 76,500,000원에 수렴한다. 또한,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고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 피고는 부동산 취득 자금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N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같은 날 N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판단된다. ㉣ 이후 피고와 N의 사실혼 해소로 위 근저당권이 2008. 11. 10. 말소되자 피고는 2008.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 고인은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에 사망 무렵까지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9,000,000원을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30,000,000원을 2002. 12. 12. 지급하고, 잔금 37,500,000원을 2002. 12. 30.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시기나, 피고의 현금 출금 시기와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 당일인 2002. 11. 22. 700,9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거래내역에 비추어, 계약 당일 500,000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을 2002. 11. 25. 현금으로 출금하여 2002. 12. 20.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과 부동산 명도일은 서로의 사정에 따라 약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우연의 일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무렵 피고의 통장에 그 거래가액 상당의 금액이 송금되었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해당 규모의 금전거래가 그 이후로는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2. 11. 25. 피고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구매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2015. 7. 21.부터 2021. 9. 16.까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는 그 이전에도 재산세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2006년 11월분부터 2021년 6월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도시가스 요금을 부담하였으며, 고인에게 2003. 5. 25.부터 2021. 4. 1.까지 생활비로 합계 27,250,000원을 송금하였다.4)

⑤ 이와 같이 피고가 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고인을 부양한 사실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인지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D 뿐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들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 즉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고 피고가 고인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지출한 금원에 대하여 일부라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면, D뿐 아니라 고인의 다른 자녀들까지도 모두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⑥ 한편 피고는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에 있어 D의 특별수익분을 주장한다.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현금인출 내지 대체된 금원이 D에게 증여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2014. 8. 17. 고인의 계좌에서 D와 O이 동업한 상가 점포의 임대인 P에게 보증금 상당의 1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8, 2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임차인이 되어 보증금을 고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증금 상당의 금액이 D에게 확정적으로 증여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D의 특별수익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D의 재산상태나 경제적인 능력 등을 고려할 때 D가 고인과 함께 살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유지 및 생활비의 지급 등 고인을 부양하는데 경제적인 기여를 하였을 여지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⑦ 이와 같이 고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 등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이의 가족법적 성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피고의 부양내용 등을 두루 고려할 때에 사회 일반의 통상적인 관념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이례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선의 여부 등에 관한 쟁점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진

별지

- 1) 소장의 '2021. 12. 10.'은 오기로 보인다.
-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피고가 주식회사 L에 양도한 실거래가 350,000,000원으로 보고 사해행위의 범위를 산정하였다.
-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고인에게 명의신탁이 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는데,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더라도,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해야 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의유효성이 인정되는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피고가 고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겠으나, 이 사건부동산의 취득시점을 고려할 때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의 위 주장의 취지는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하에서 그에 관하여 본다.
- 4) 피고는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의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전화료도 모두 자신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13, 15 내지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납부한 각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